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49
----------	------

2024년 1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 상정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함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 나.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관련 규정(구성 및 운영, 위원 임기 및 해촉, 회의 운영 등) 삭제(안 제12조제3항~제11항)
- 다.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 라. 개정 조례 시행일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2024. 11. 9.)로 함(안 부칙 제1조)
- 마.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사항에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위촉 위원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 6. 7. ~ 6. 27.)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유사한 목적 및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개요 및 운영현황

- 현재 본 조례 제12조에서는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에서는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는 ①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자문·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는 총 6회 개최되었고,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최근 3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위원자격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장애인복지분야의대학교수 ◦ 장애인복지기관을대표하는자 ◦ 장애인인권단체대표 ◦ 법조인 ◦ 그 밖에 장애인차별과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회의 개최 횟수	2회	2회	2회
회의 안건	○ 제1차(4.25~27.) - 심의안건 : 2022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안) ○ 제2차(12.26.) - 제5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호선 - 2022년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심의.의결 - 제3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논의	○ 제1차(5.12.) - 심의안건 : 2023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시행계획 ○ 제2차(12.8.) -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심의	○ 제1차(2.23.) - 심의안건 : 제3기(2024~2028)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안) ○ 제2차(5.1~5.3.) - 2024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안) 심의
예산 내역	◦ 예산액(통계목) : 4,000천원(사무관리비) ◦예산산출근거:회의수당150천원*10명*2회/자문수당등	◦ 예산액(통계목) : 4,000천원(사무관리비) ◦예산산출근거:회의수당150천원*10명*2회/자문수당등	◦ 예산액(통계목) : 2,000천원(사무관리비) ◦예산산출근거:회의수당150천원*6명*2회/자문수당등

나. 장애인복지위원회 개요 및 운영현황

- 「장애인복지법」 제 13조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장

1)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애인 복지위원회 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는 ①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총 10회 개최되었으며,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최근 3년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위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관련 단체장 ◦ 장애인문제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회의 개최 횟수	5회	1회	4회
회의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회(4.20.) - 부위원장 선출 -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 업무보고 및 제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회(4.13.) - 주요 업무보고 - 장애인의날 주간행사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회(4.9.) - 위원회 세부구성(부위원장 선출,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사회(10.6.) - 장애인의날 행사계획 제안 - 업무보고(어울림플라자 등) ○이동권보장소위원회(11.25.) -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감소 방안 - 시각장애인 복지콜 증차 및 증원 - 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 - 지하철역 환승구간 이용 관련 ○일자리소위원회(11.28.) - 공공일자리 및 생계급여 관계 - 공공일자리 연속성 및 장기계획 수립 ○탈시설소위원회(11.30.) - 탈시설화 추진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업무보고 ○자립지원소위원회(5.24.)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수립방향 및 세부과제 검토 ○자립지원소위원회(6.20.)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세부과제 검토 ○자립지원소위원회(7.4.)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세부과제 검토
예산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액(통계목) : 67,200천원 ° 예산산출근거 - (위원수당) 43,200천원 - (TF팀운영, 심의자료등) 24,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액(통계목) : 67,200천원 ° 예산산출근거 - (위원수당) 43,200천원 - (TF팀운영, 심의자료등) 24,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액(통계목) : 41,400천원 ° 예산산출근거 - (위원수당, 위원회개최등) 41,400천원

다. 위원회 통합 관련 (안 제12조제1항, 제3항~제11항, 제13조제2항)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집행기관(조직담당관)에서는 이에 근거해 『‘24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개선계획에 따르면 복지정책실의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는 모두 장애인복지·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전반적 권익향상과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함.
- 이에 상위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분과 위원회로 운영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음.
- 위원회의 기능상 분류에 대한 법령상 정의는 특별히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참고하여 분류하나 통상 위원회의 기능에는 심의와 자문이 혼재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자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의 명칭과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다른 조례로 정한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음.²⁾
- 본 조례개정안은 집행기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내용을 반영해 위

2)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37

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됨.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①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p>	<p>제12조(심의)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	개정안
<p><u>다.</u></p> <p><u>⑤ 당연직 위원은 복지실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u> <u>2. 장애인복지 분야의 대학교수</u> <u>3.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자</u> <u>4. 장애인인권단체 대표</u> <u>5. 법조인</u> <u>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p><u>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⑦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u></p> <p><u>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현행	개정안
<p>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u>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p> <p>2. <u>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u></p> <p>3. <u>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⑩ <u>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⑪ <u>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u></p> <p>제13조(보상금 지급 등) ① (생략)</p> <p>② <u>보상금의 지급 여부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u></p>	<p>제13조(보상금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장애인복지위원회-----</p>

현행	개정안
상금의 지급절차, 금액,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 -----. ③ (현행과 같음)

라. 기타 개정사항 (안제2조, 안제9조제2항, 안제10조, 안제10조의2, 안제10조의3, 안제10조의4)

- 그 외에도 본 조례개정안은 조문을 국어 맞춤법에 따르고 기관 명칭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
1. <u>‘장애’라 함은</u>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1. <u>“장애”란</u> ----- ----- ----- -----
2. <u>‘장애인’이라 함은</u>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장애인	2. <u>“장애인”이란</u> ----- -----

현행	개정안
<p>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p>	<p>----- ----- ----- ----- ----- ----- -----.</p>
<p>3. <u>‘장애인 차별금지’라 함은</u>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p>	<p>3. <u>“장애인 차별금지”란</u> ----- ----- ----- ----- -----.</p>
<p>4. <u>‘장애인 인권증진’이라 함은</u>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p>	<p>4. <u>“장애인 인권증진”이란</u> ----- ----- ----- ----- ----- ----- -----.</p>
<p>5.·6. (생략) 제9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홍보) ① (생략)</p>	<p>5.·6. (현행과 같음) 제9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홍보)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해야 한다.</p>	<p>② ----- ----- <u>노리집</u>-----.</p>
<p>제10조(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p>	<p>제10조(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① ----- ----- ----- -----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p>
<p>② <u>기관</u>에는 기관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p>	<p>②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 ----- -----.</p>
<p>③ <u>기관장</u>은 상근으로 한다.</p>	<p>③ <u>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u>-----.</p>
<p>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u>기관</u>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④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 -----.</p>
<p>⑤ (생략)</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 <u>기관</u>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제10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③ 기관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6. (생략)</p> <p>제10조의3(운영 위탁) ① 시장은 기관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서 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p>	<p>②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p> <p>-----</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p> <p>-----</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3(운영 위탁) ① -----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 -----</p> <p>-----</p> <p>-----</p> <p>-----</p> <p>-----.</p> <p>②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p> <p>-----</p>

현행	개정안
<p>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p>제10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u>자</u>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p> <p>제10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p> <p>-----</p> <p>-----</p> <p>-----.</p> <p>----- <u>사람</u>-----</p> <p>-----</p> <p>-----.</p>

마. 관련 조례개정 :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 이와 관련해 부칙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하였음.

〈표〉 본 조례개정안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2조(기능) -----</p> <p>-----</p> <p>-----</p> <p>-----.</p>

현행	개정안
<p>1.·2. (생략) <u><신설></u></p> <p>3. (생략)</p> <p>제3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p> <p>1. (생략)</p> <p>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3.·4.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3. <u>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문제 및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하여</u> --</p> <p>3.·4. (현행과 같음)</p>

3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집행기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내용을 반영해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해 그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통합 적용시점에 대해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내용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을 시행일로 하였으나, 개정안의 심사가 연기됨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함(안 부칙 제1조).

VI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49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24년 12월 18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통합 적용시점에 대해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을 시행일로 하였으나, 개정안의 심사가 연기됨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함(안 부칙 제1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2024년 11월 9일부터</u>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공포한 날</u> 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 문제 및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조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애’라 함은”을 “‘장애’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이라 함은”을 “‘장애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 차별 금지’라 함은”을 “‘장애인 차별금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장애인 인권증진’이라 함은”을 “‘장애인 인권증진’이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 중 “기관”을 각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장”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을 각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전단 중 “기관”과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을 각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4 전단 중 “기관”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심의)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제2항 중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 문제 및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장애’</u> 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p> <p>2. <u>‘장애인’</u>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p> <p>3. <u>‘장애인 차별금지’</u> 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p>	<p>제2조(정의) ----- --- <u>뜻은 다음과</u> -----.</p> <p>1. <u>“장애”</u>란 ----- ----- ----- ----- ---.</p> <p>2. <u>“장애인”</u> 이란 ----- ----- ----- ----- ----- ----- -----.</p> <p>3. <u>“장애인 차별금지”</u>란 ----- ----- ----- -----</p>

현행	개정안
<p>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p> <p>③ <u>기관장</u>은 상근으로 한다.</p> <p>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u>기관</u>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10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 <u>기관</u>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4. (생략)</p> <p>② <u>기관</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③ <u>기관</u>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6. (생략)</p>	<p>-----.</p> <p>③ <u>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u>-----.</p> <p>④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p> <p>1.·2. (현행과 같음)</p> <p>③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p> <p>1. ~ 6.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0조의3(운영 위탁) ① 시장은 <u>기관</u>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서 <u>기관</u>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p>제10조의3(운영 위탁) ① ----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 ----- ----- ----- ----- ----- -----.</p> <p>②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 ----- -----.</p>
<p>제10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u>기관</u>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u>자</u>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 ----- ----- ----- ----- <u>사람</u>----- -----.</p>
<p>제12조(<u>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u>) ① <u>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둘 수 있</p>	<p>제12조(<u>심의</u>) <u>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u></p>

현행	개정안
<p>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당연직 위원은 복지실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장애인복지 분야의 대학교수 3.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자 	<p>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	개정안
<p><u>4. 장애인인권단체 대표</u></p> <p><u>5. 법조인</u></p> <p><u>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p> <p><u>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⑦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u></p> <p><u>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p><u>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p> <p><u>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u></p> <p><u>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u></p>	

현행	개정안
<p><u>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⑩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⑪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보상금 지급 등) ① (생략)</p> <p>② 보상금의 지급 여부는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상금의 지급절차, 금액,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생략)</p>	<p>제13조(보상금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장애인복지위원회----- ----- -----.</p> <p>③ (현행과 같음)</p>